

#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

## 자주 묻는 질문 (FAQ)

1	Q	청년월세 신청하고 기준에만 맞으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?
	A	2026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됩니다. 매년 신규 인원을 모집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규모만 선정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.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선정기준 우선 순위에 따라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.
2	Q	청년월세 24회 지원이 완료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?
	A	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최대 24회만 지원합니다. 따라서 이번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 다만,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예시1) 한시 1차에서 10회 지원 후 중단 → 한시 2차 때 미선정된 경우 이번 신규 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될 시 14회 지원 가능 예시2) 한시 2차 지원으로 20회 지급 후 주소지 변동 등으로 중지되었을 경우 이번 신규 신청이 아닌 변경신청을 통해 4회 지원 가능
3	Q	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) 및 확인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
	A	청년월세를 신청하시면 군구 조사팀에서 시스템을 통해 청년가구 및 원가구(청년 가구 + 부 + 모)의 소득과 관련된 기관에 (공적)자료를 요청합니다. 기관별로 회신 되는 보수월액, 국세청종합소득 등을 회신받아 산출된 소득평가액과 기준 금액을 비교합니다. ※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사업소득공제  [참고 :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금액 제외 시 소득 기준] ※ 재산 및 공적이전 소득 등으로 인해 변동 가능 • 청년가구 :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 (2026년 기준 1인가구 약 219만원) • 원가구(청년가구 + 부 + 모) :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 (2026년 기준 3인 약 765만원)  신청인의 정확한 소득평가액은 신청 후 시스템을 통해 산출 가능합니다.

4	Q	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.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.
	A	<p>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기관의 월평균보수액 자료로 확인합니다. 여러 기관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다음 순으로 반영됩니다.</p> <p>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→ ②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→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→ ④ 국세청 종합소득(근로소득)</p> <p>※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&gt; 민원여기요 &gt; 개인민원 &gt; 보험료조회 &gt;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</p>

5	Q	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?
	A	<p>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,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.</p>

6	Q	주택, 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	A	<p>한국부동산원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 에서 청약자격확인 &gt; 주택소유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p>

7	Q	월세가 갑자기 안 들어왔어요. 월세지원이 중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?
	A	<p>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월세지원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[월세지원 중지 사유]</p> <p>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        ②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        ③ 실종신고 절차 진행 중 또는 가출·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        ④ 부모와 합가(주민등록 여부 불문), 주택 소유,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        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       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·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        ⑦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       ⑧ 타 주소지로 전출,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후 15일 내 미신고한 경우</p>

8	Q	<b>계약서 상 임대인이 배우자의 부모님인 경우 지원 제외되나요?</b>
	A	<p>청년월세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</li> <li>• 부모와 함께 거주(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)하는 경우</li> <li>•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</li> <li>•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</li> <li>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</li> <li>•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</li> <li>•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종인가 등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</li> </ul> <p>임대인이 배우자의 부모님인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 포함되므로 지원 제외됩니다.</p>

9	Q	<b>월세 지원을 받는 중에 대상 연령을 넘어갔어요. 월세 지급이 중단되나요?</b>
	A	월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.

10	Q	<b>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데 청년가구에 포함되나요?</b>
	A	배우자·자녀는 신청인과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로 등록됩니다. 이외 민법상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등록됩니다.

11	Q	<b>청년가구,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.</b>
	A	<p>[예시1] 언니와 함께 원룸 거주, 가족은 부모님·언니·오빠(기혼, 별도 거주) → 청년가구: 2인(본인, 언니), 원가구: 4인(본인, 언니, 부모)</p> <p>[예시2] 친구와 함께 거주, 부모님 이혼 후 각자 가정, 형제 없음 → 청년가구: 1인(본인), 원가구: 3인(본인,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)</p> <p>[예시3] 결혼하였고 자녀 없음 → 청년가구: 2인(본인, 배우자), 원가구: 미적용</p> <p>[예시4] 31세이고 동생과 거주 → 청년가구: 2인(본인, 동생), 원가구: 미적용</p>

12	Q	한 달 전에 계약해서 월세를 1회밖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. 월세 이체 내역이 3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신청해야 하나요?
	A	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,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(1회 이상)을 제출하면 됩니다.
13	Q	기숙사에 살아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데 임대차계약 증빙을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?
	A	입실확인서,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이 있습니다. 하숙의 경우 (임대)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회사기숙사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14	Q	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데 신청 가능할까요?
	A	임대차 계약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15	Q	월세 지원 신청가능 연령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나요?
	A	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(19~34세가 되는 해의 1.1.~12.31.)으로 하고,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. [2026년 신청연령] • 19세 ~ 34세 : 1991년 ~ 2007년생
16	Q	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.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	A	주거급여(월차임분)에서 2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, 20만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[예시] 월세 30만원 중 주거급여(월차임분) 10만원 지원받는 경우 → 청년월세 지원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가능 ※ 주거급여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여부 조사 중인 자가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, 다른 인원들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 선정하나, 청년 주거급여 수급여부 결정 확인 후 지원금 지급(5월분부터 소급) ※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여부 결정 확인 전까지 월세 지원대상자의 지급 보류
17	Q	2026년 3월에 신청할 경우 2026년 1~2월분도 지원이 되나요?
	A	2026년부터 신청월과 관계없이 5월분부터 지급됩니다.(단, 계약기간이 유효해야 함) 예) 2026년의 경우 → 2026년 5월(9월에 5개월분 소급지급) ~ 2027년 4월
18	Q	보증금이 1천만원, 월세가 80만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	A	[변경 답변 (2024.4.12. 이후 적용)] 보증금 및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
19	Q	소득·재산 기준 적용시점이 언제인가요?
	A	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조사 당시 시점(회신 기관에서 보내주는 금액 반영)으로 적용됩니다. (소득 회신 기관별로 소득재산 산출시점은 다를 수 있음)

20	Q	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거주지가 변경되었어요.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?
	A	거주지역, 임대차 계약 내용(임차보증금, 월세, 계약자 변경 등)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자는 해당 시·군·구 청년월세 담당부서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

21	Q	기준 중위소득 60%, 100%가 얼마인가요?																							
	A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2026년 기준 중위소득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1인가구</th> <th>2인가구</th> <th>3인가구</th> <th>4인가구</th> <th>5인가구</th> <th>6인가구</th> <th>7인가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월가구)100%</td> <td>2,564,238</td> <td>4,199,292</td> <td>5,359,036</td> <td>6,494,738</td> <td>7,556,719</td> <td>8,555,952</td> <td>9,515,150</td> </tr> <tr> <td>(청년가구)60%</td> <td>1,538,543</td> <td>2,519,575</td> <td>3,215,422</td> <td>3,896,843</td> <td>4,534,031</td> <td>5,133,571</td> <td>5,709,09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신청자의 (가구별) 소득금액이 회신오면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최종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합니다.</p>	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	(월가구)100%	2,564,238	4,199,292	5,359,036	6,494,738	7,556,719	8,555,952	9,515,150	(청년가구)60%	1,538,543	2,519,575	3,215,422	3,896,843	4,534,031	5,133,571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																		
(월가구)100%	2,564,238	4,199,292	5,359,036	6,494,738	7,556,719	8,555,952	9,515,150																		
(청년가구)60%	1,538,543	2,519,575	3,215,422	3,896,843	4,534,031	5,133,571	5,709,090																		

22	Q	현재 2025년에 신청한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어요. 중복으로 신청 가능한가요?
	A	수혜 중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24회 지급 완료자는 자격이 종료됩니다.